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92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1.

발 의 자: 민형배·김문수·이개호

안도걸 · 소병훈 · 주철현

이성윤 · 박홍배 · 정동영

윤준병·김용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암표매매 행위 금지 범위를 온라인, 인터넷, 전자상거래, 통신판매 등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. 변화된 환경에 따른 암표 매매 근절의 효 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.

현행법은 암표매매의 거래장소를 흥행장, 경기장, 역, 나루터, 정류장,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 등 오프라인상 특정장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.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

이에, 암표매매 행위 금지 범위를 온라인까지 폭넓게 넓히고자 합니다. 시민 불편 해소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제3조제2항제4호).

법률 제 호
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 중 "곳에서"를 "곳이나 온라인, 인터넷, 전자상거래, 통신판매 등을 통해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경범죄의 종류) ① (생	제3조(경범죄의 종류) ① (현행과		
략)	같음)		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		
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			
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의 형			
으로 처벌한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4. (암표매매) 흥행장, 경기장,	4		
역, 나루터, 정류장, 그 밖에			
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			
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			
<u>곳에서</u> 웃돈을 받고 입장권·	곳이나 온라인, 인터넷, 전		
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	자상거래, 통신판매 등을 통		
사람에게 되판 사람	해서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